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0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과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향후('24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 협의완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하 “50+ 재단”)의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정의, 재단의 사업 등의 “장년층”(50세 이상 65세미만)을 “중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개정하며,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인생이모작 조례」)의 제명 변경(장년층→중장년층)을 반영(안 제2조)하고, 조문(맞춤법, 용어 개선 등)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 목적, 정의, 재단의 사업 등 개정
 - ▶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3호부터 제9호, 제14조 제1항)
- 관련 조례 제명 개정
 -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연령 변경
 - ▶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호)
- 용어의 정비
 - ▶ 명확한 표현 및 띄어쓰기 (제6조,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 결말 (안 제12조)

- 본 개정안은 「인생이모작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중장년 사업의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 50+재단에서 수행 중인 ‘서울런 4050’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50+재단은 “중장년층”을 ‘중년층(40세에서 49세)과 장년층(50세에서 64세)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여, ‘중장년층’을 40세에서 64세(2024년 기준, 1959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에 포함되는 연령)로 설명하고 있음.
- ※ 통계청에서는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발표(2023.12.20.)를 통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주요 현황 〉

(단위: 천명, %)

구분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생애단계별 인구 수	14,920	20,204	9,046

출처: 통계청

- ※ 중장년의 기준 연령은 법률로 정해진바 없으며,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중장년 대상을 만40세부터 64세까지로하여 지원하고 있음.
-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5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노인 기준 연령을 유추가능함.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노인복지법」제1조의2(정의)

1~4. (생략)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나. 50+재단의 사업대상 확대

1) “장년층(50~65세)”을 “중장년층(40~65세)”으로 수정

○ 안 제1조, 제2조 등은 정책 및 사업의 대상을 “장년층(50세에서 65세)”에서 “중장년층(40세에서 65세)”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서울런 4050 정책 대상의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안 중 장년층(50~65세)을 중장년층(40~65세)으로 수정하는 조문(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3호부터 제9호, 제14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u>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장년층</u> ” 이라 함은 「 <u>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u>50세</u>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u>중장년층</u> ” 이라 함은 「 <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 ----- <u>40세</u> ----- -----.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 (생략)
3.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8.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생략)

제5조(재단의 사업) -----
-----.

1. ~ 2. (현행과 같음)
3. 중장년층 -----

4. 중장년층 -----

5. 중장년층 -----

6. 중장년층 -----
7. 중장년층 -----
8. 중장년층 -----

9. ----- 중장년층 -----

제6조(재산) -----
----- 구체적인 -----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
---- 중장년층 -----
(생략)

- 장년층(50~64세)에서 중장년층(40~64세)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평생교육국과 50+재단 입장에서는 성과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 평생교육국과 50+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제공가능한 서비스의 규모는 한계가 있어, 현행 조례의 대상인 50~64세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나 정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바, 정책 대상 변경의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 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현행 조례의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 제정안 의결(2015.09.18.) 당시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 개정 전(前) 중장년 대상 사업 시행

- 50+재단은 이미 홈페이지 및 사업의 대상 연령을 만40~65세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과 조례의 불일치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으나,
 - 조례의 개정 없이 사업 대상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했고, 정책과 사업추진 근거의 불일치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던바, 본 개정안 제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런 4050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근거 없이 장년층 대상인 50+재단 사업범 위를 40대인 중년층까지 확대시켰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출처 :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50+재단 사업별 대상자 연령 및 참여 내역 〉

(2024.05.31. 기준)

연번	사업명	대상자 연령	목표	참여인원
1	중장년 인턴십	40~64세	450명	104명
2	중장년 채용설명회	40~64세	2,000명	719명
3	중장년 이직지원	40~59세	100명	66명
4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40~64세	3,000명	7월 추진 예정
5	중장년 취업 컨설팅	40~64세	1,420명	1,012명
6	중장년 경력설계 상담	40~64세	11,000건	5,354건
7	중장년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40~64세	1,300명	368명
8	중장년 디지털 직무역량 개발 프로그램	40~64세	2,400명	1,000명
9	중장년 창업보육공간 지원	40~64세	85%(연평균 입주율)	82.5%
10	중장년 창업 컨설팅	40~64세	130건	7월 추진 예정
11	40대 특화 직업전환지원 협력체계 운영	40~49세	2,060건	2,732건
12	40대 특화 직업전환 프로그램	40~49세	3,920건	1,387건
13	40대 직업캠프 운영	40~49세	60명	참여자 모집 중
14	(보조금)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	40~64세	45명	45명
15	(보조금)중장년 사회공헌(보람일자리) 운영	40~67세	3,523명	3,302명

출처: 50+재단

- ※ 50+재단 온라인 홈페이지(www.50plus.or.kr)의 재단 소개에 따르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365만 서울시 중장년 세대(만40~64세)를 위한 생애설계, 직업교육,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로 50+재단을 소개하고 있으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에 대한 사업 설명과 50+재단의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 평생교육국에서 2022년 12월 30일 발표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은 장년(50~64세)을 위한 정책에서 40대를 포함한 중장년(40~64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과 재교육 훈련 강화 등 인생 이모작 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했으며,
 - 평생교육국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은 ‘서울런 4050’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정책 수행을 위해 40대는 재창업 및 창업, 직업 유지 등을 지원하고, 50대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생활 균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50+재단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며, 현행 조례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을 포함한 ‘서울런 4050’ 사업을 수행 중이며, 40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15개 사업(2024년 5월 31일 기준)을 추진 중임.

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안 제2조는 장년층 관련 지원대상(50~64세→40~64세)을 확대하기 위해 「인생이모작 조례」의 개정안(장년층→중장년층 개정 예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과 함께 금번 정례회에 동시에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u>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u>50세</u>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중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u>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 」 ----- <u>40세</u> ----- -----.

- 다만, 「장년층 인생이모작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않는 경우, 본 개정안도 원안으로 가결할 수 없는바, 관련 조례 간 연계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용어의 정비

1) 명확한 표현 및 결말 (제6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2항)

- 개정안은 ‘구체적’을 ‘구체적인’로 개정하고,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개정하며,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고, ‘시와’를 ‘서울특별시와’로 개정하며,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개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하는 등 의미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u>구체적</u>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 ----- ----- <u>구체적인</u> ----- -----.
제10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이 <u>부득이 한</u>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부득이한</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u>범위 안</u> 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 교부) ----- ----- <u>범위</u> -----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u>장년층</u>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 ----- <u>중장년층</u> ----- ----- -----.
② 재단은 <u>시와</u>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② ----- <u>서울특별시와</u> -----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의회 -----

-----.

제1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 -----

-----.

- 명확한 표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용어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용어 변경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용어의 정비가 반복되는바, 본 개정안을 포함한 타 조례 제·개정시 명확한 표현뿐만 아니라 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면밀한 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김 준 년
---------	-------	-----------	-------